

2021학년도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



## 전주 호성중학교

☎ 4817 전주 덕진구 배미실마을길 23

교 장 실 : (063)253-6948  
교 무 실 : (063)253-6946  
행 정 실 : (063)253-6945  
식생활관 : (063)253-6944  
F A X : (063)253-6936

인성부실 : (063)253-6951  
3학년실 : (063)253-6960  
2학년실 : (063)253-6950  
1학년실 : (063)253-6947  
<http://www.hosung.ms.kr>

# 차 례

I. 학교 기본 현황 .....	1
1. 학교 연혁 .....	1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	1
3. 시설 현황 .....	1
4. 본교 교육 기본방향 .....	2
5. 역점교육 및 특화교육 .....	3
6. 학교경영 기본방향 .....	4
7. 2021학년도 학사일정 .....	5
8. 2021학년도 시정표 .....	7
9. 2021학년도 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	8
II. 학교 주요 규정 .....	9
1. 학생 출결사항 관리 규정 .....	9
2. 학생 체험학습 관리 규정 .....	11
3. 원격수업 출결 관리 규정 .....	12
III. 학부모 연수 .....	13
1. 학생 상담주간 안내 .....	13
2.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	14
3. 성폭력, 성평등, 흡연, 미세먼지, 감염병 예방 교육 .....	19
4.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예방 교육 .....	27
5. 3학년 진학 관련 안내 .....	29
6. 학부모 부패방지 청렴교육 .....	35
7. 교육활동 보호 교육 .....	37
8.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 .....	40
9.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선행교육 규제 교육 .....	49
IV. 부록 .....	50
1. 업무별 보직교사 명단 .....	50
2. 학급 담임교사 명단 .....	50
3. 학급 담임교사 연락처 .....	50

# I 학교 기본 현황

## 1. 학교 연혁

○	1993. 4. 3.	전주호성중학교 설립 인가(24학급)
○	1997. 1. 1.	초대 송병관 교장 부임
○	1997. 3. 3.	개교 및 제1회 입학식(7학급 278명)
○	2017. 12. 27.	다목적 시청각실 준공(증개축 150석)
○	2020. 9. 1.	제9대 김갑식 교장 부임
○	2021. 2. 5.	제22회 졸업식(졸업생 110명, 총 4,497명)
○	2021. 3. 2.	제25회 입학(5학급, 133명)

##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 가. 학생 현황

구 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계
학 급 수		5	5	5	15
학 생 수	남	70	76	57	203
	여	63	68	75	206
	계	133	144	132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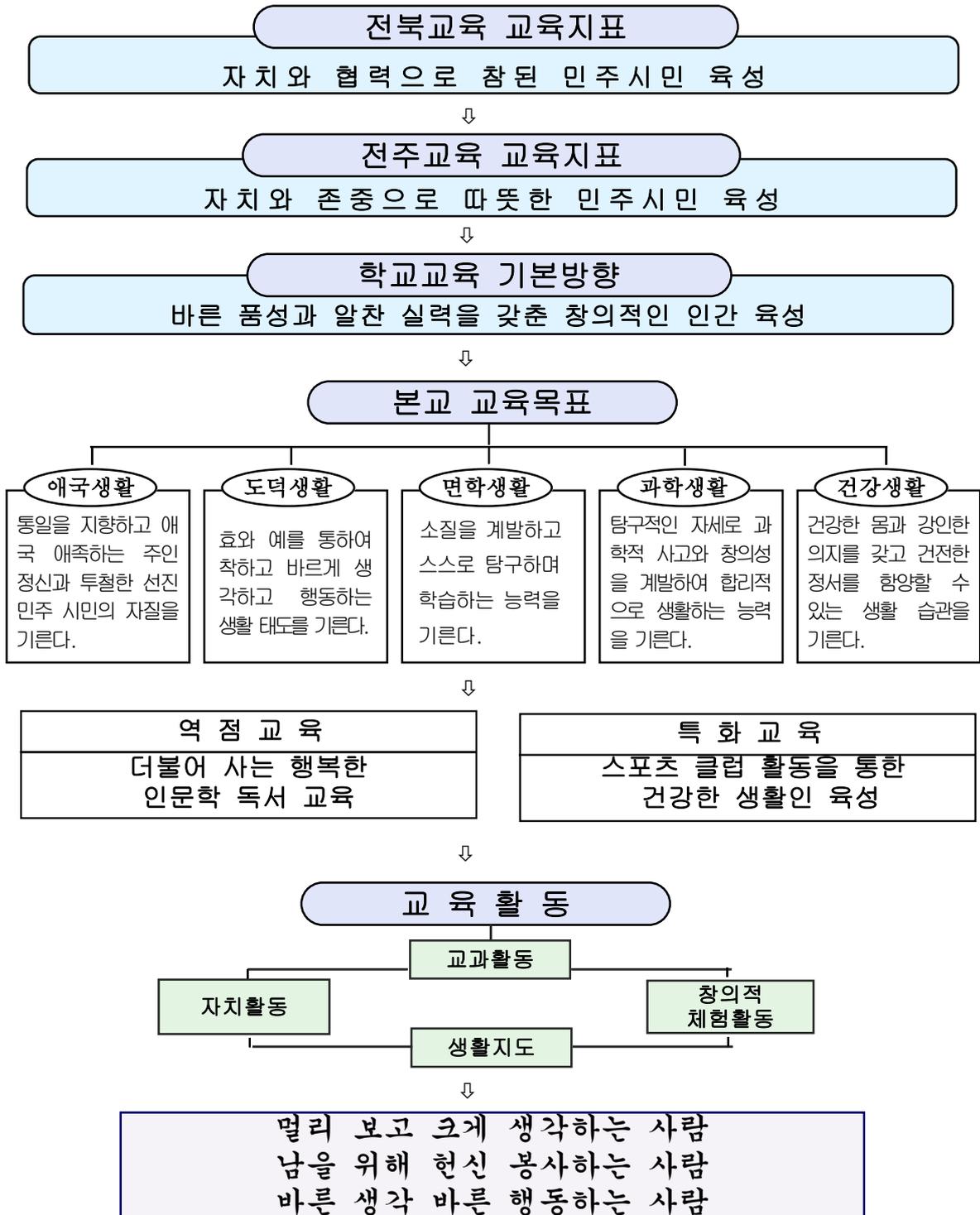
### 나.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 원									교육일반					합 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영양	보건	상담	영어 회화	소계	행정 실장	일반직	교육 공무직	기타	소계	
남	1	1	3	4	·	·	1	·	10	·	·	2	2	4	14
여			6	13	1	1	·	1	22	1	2	8	·	11	33
계	1	1	9	17	1	1	1	1	32	1	2	10	2	15	47

## 3. 시설 현황

교 지		관리실	일반교실	특별 교실	부 속 시 설							
교사	체육장				강당	식생활관	시청각실	당직실	방송실	화장실	창고	
6,292㎡	5,985㎡	10	14	15	1	1	1	1	1	1	18	1

#### 4. 본교 교육 기본방향



## 5. 역점교육 및 특화교육

###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문학 독서 교육

#### 목 표

- 다양한 독서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 함양
-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통과 공감 능력 함양

#### 방 침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실시
-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동 전개,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조직 및 운영
-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및 도서관 행사 추진

#### 기대효과

-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 배려하고 나누는 따뜻한 인성 함양
- 문학 작품의 창조적 수용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 독서 능력 및 자기주도적 참학력 신장

###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인 육성

#### 목 표

- 신나는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 갖기
- 체육 활동 활성화로 활기차고 즐거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능동적이고 창의적 스포츠 활동으로 바른 인성 함양 및 학습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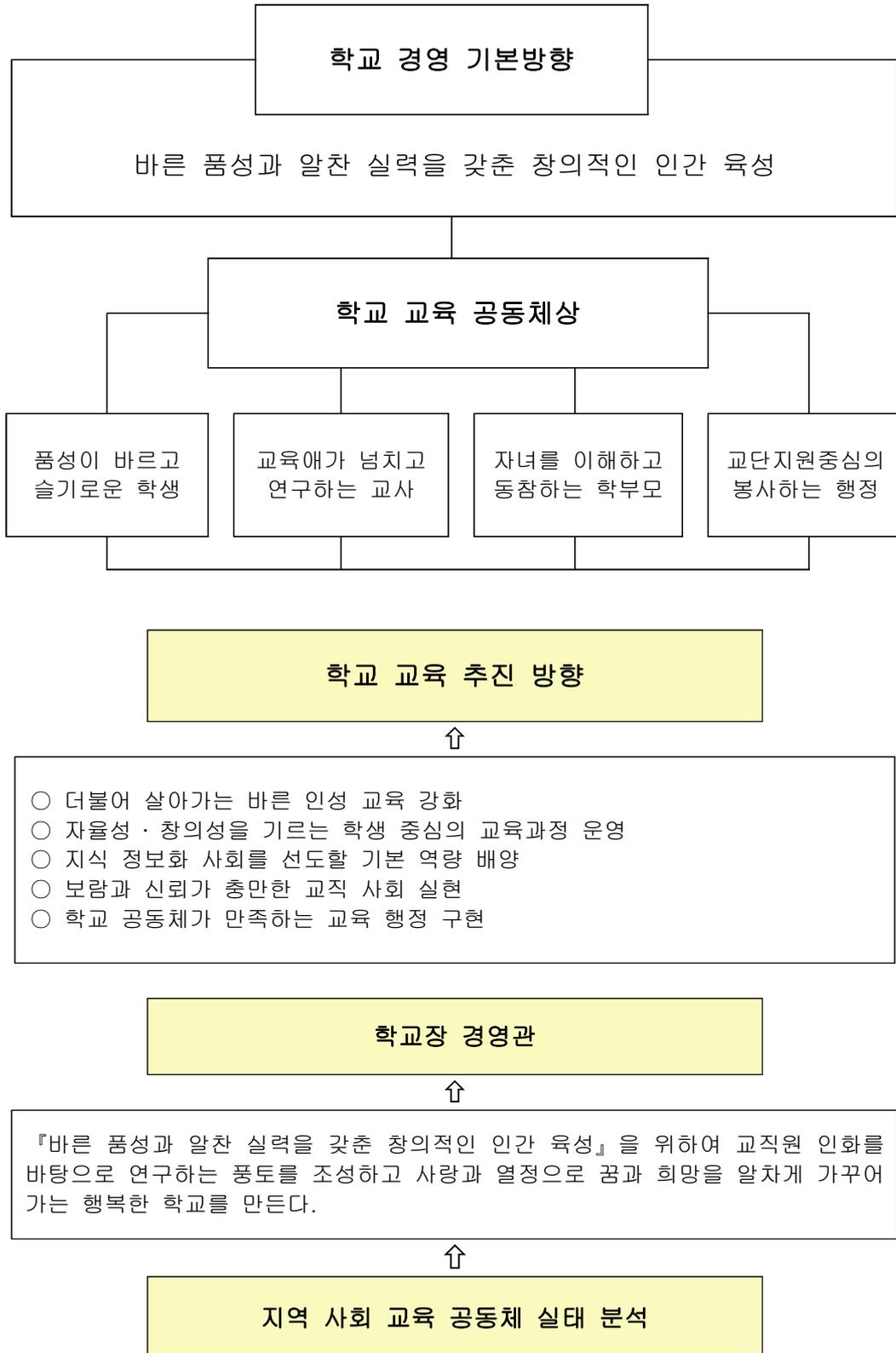
#### 방 침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장 마련
- 학생 자율 스포츠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체육 시설 확충

#### 기대효과

-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 고취
- 스포츠맨십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학생 체력 증진 및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시간 활용

## 6. 학교 경영 기본방향



## 7. 2021학년도 학사일정

### 가. 1학기 학사일정

월	주	교육 일정										주 계	월 계		
		월	화	수	목	금	토								
3	1	1	3.1절	2	입학식 시업식	3		4		5		6		4	22
	2	8		9		10		11		12		13		5	
	3	15		16		17		18		19		20		5	
	4	22	상당주간 수업공개주간	23	교육계획설명회	24		25		26		27		5	
	5	29		30		31								3	
4	5						1		2		3	개교기념일		2	22
	6	5		6	영어듣기평가(1)	7	생애주기안전체험 (2학년)	8	영어듣기평가(2) 생애주기안전체험(3)	9	영어듣기평가(3)	10		5	
	7	12		13		14		15		16		17		5	
	8	19		20		21		22		23		24		5	
	9	26	1학기1차고사	27	1학기1차고사	28	1학기1차고사	29		30				5	
5	9											1		0	19
	10	3		4		5	어린이날	6		7		8		4	
	11	10		11		12		13		14		15		5	
	12	17		18		19	부처님 오신 날	20		21	현장체험학습 (1,2,3)	22		4	
	13	24		25		26		27		28		29		5	
	14	31												1	
6	14			1		2		3		4		5		4	22
	15	7		8	수업공개의날 (학부모)	9		10		11		12		5	
	16	14		15		16		17		18		19		5	
	17	21		22		23		24		25		26		5	
	18	28	1학기2차고사	29	1학기2차고사	30	1학기2차고사							3	
7	18							1	1학기2차고사	2		3		2	12
	19	5		6		7		8		9		10		5	
	20	12		13		14		15		16	여름방학식 교육과정평가회	17	교육과정 평가회	5	
	21	19		20		21		22		23		24		0	
	22	26		27		28		29		30		31		0	
8	23	2		3		4		5		6		7		0	0
	24	9		10		11		12		13		14		0	
	25	16		17		18		19		20		21		0	
1학기 계													97		

나. 2학기 학사일정

월	주	교 육 일 정										주계	월계		
		월	화	수	목	금	토								
8	26	23	개학	24		25		26		27		28		5	7
	27	30		31										2	
9	27					1		2		3		4		3	19
	28	6		7	영어듣기평가(1)	8	영어듣기평가(2)	9	영어듣기평가(3)	10		11		5	
	29	13	상담주간	14	수업공개일 날 (학부모)	15		16		17		18		5	
	30	20	추석 연휴	21	추석	22	추석연휴	23		24		25		2	
	31	27		28		29		30						4	
10	31									1		2		1	21
	32	4		5		6	2학기1차고사	7	2학기1차고사	8	2학기1차고사	9		5	
	33	11	테마식학습(2,3) 수련활동(1)	12	테마식학습(2,3) 수련활동(1)	13	테마식학습(2,3)	14		15		16		5	
	34	18		19	한마음체육행사	20		21		22		23		5	
	35	25		26		27		28		29		30		5	
11	36	1		2		3		4		5		6		5	22
	37	8	수업공개주간 (동료장학)	9		10		11		12		13		5	
	38	15		16		17		18	(대입 수능)	19		20		5	
	39	22		23		24		25		26		27		5	
	40	29		30	2학기2차고사									2	
12	40				1	2학기2차고사	2	2학기2차고사	3	2학기2차고사	4			3	22
	41	6		7		8		9		10		11		5	
	42	13		14		15	교육과정평가회	16		17		18		5	
	43	20		21		22	사정회	23		24		25	성탄절	5	
	44	27	호성예술제	28	학생회장선거	29		30	겨울방학식	31				4	
1	44											1	신정	0	0
	45	3		4		5		6		7		8		0	
	46	10		11		12		13		14		15		0	
	47	17		18		19		20		21		22		0	
	48	24		25		26		27		28		29		0	
	49	31	설날 연휴											0	
2	49		1	설날	2	설날 연휴	3		4	개학	5			1	3
	50	7		8	졸업식 종업식	9		10		11		12		2	
	51	14		15		16		17		18		19		0	
	52	21	교육과정세움 워크숍	22		23		24		25		26		0	
	53	28												0	
2학기 계												94			
1,2학기 총계												191			

8. 2021학년도 시정표

구 분		시 간		
등 교		~ 08:40		
조 회		08:40 ~ 08:50		
1 교 시		08:50 ~ 09:35		
2 교 시		09:45 ~ 10:30		
3 교 시		10:40 ~ 11:25		
4 교 시		11:35 ~ 12:20		
점심시간		12:20 ~ 13:20		
5 교 시		13:20 ~ 14:05		
6 교 시		14:15 ~ 15:00		
7 교 시		15:10 ~ 15:55		
청소 · 종례	6교시 수업일]	15:00 ~ 15:15		
	7교시 수업일]	15:55 ~ 16:10		
<b>버스 승차 시간</b>				
	1학년	2학년	3학년	
월 · 화 · 목	16:20 승차완료			
수	15:25 승차완료			
금	15:25 승차완료		16:20 승차완료	

## 9. 2021학년도 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단위: 천원)

사업항목	사업내용	물량	예산편성액	비고
지역현안사업	외부창호교체	43실	912,890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사대수선(외벽방수)	21실	103,425	
	교사대수선(창호교체)	2실	42,460	
	교사대수선(내벽보수)	2.5실	33,625	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설치	1대	185,000	승강기
과학융합인재 교육사업	과학실 노후 환경개선	1실	40,000	과학실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운영	1실	8,000	
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기구	14종	30,570	급식실
합 계			1,355,970	

## II 학교 주요 규정

### 1. 학교 출결사항 관리 규정

- 가. **지각** : 1교시 시작 시각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사로부터 발급받아 교과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조퇴증)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 1) 미인정결과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 ② 수업시작 시각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③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교과 담당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서 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
- ④ 수업시간에 교과 담당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 2) 질병결과

- ① 수업 시작 전에 보건실 질병확인증을 발급받아 교과 담당 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수업에 빠지는 경우
- ② 보건실에서 질병확인증을 발급받고 수업에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5분 이내는 정상 출석인정)
- ③ 기타 병원진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업에 5분 이상 늦게 들어오거나 그 수업 시간 전체를 빠진 경우

라.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미인정 결석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③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3) 기타 결석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학생 체험학습 관리 규정

### 가. 학교 규칙

#### 제1조(수업일수)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나.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호성중학교 학교 규칙」 제1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제3조(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3. 원격수업 출결 관리 규정

	혼합수업에 따른 출결사항 원칙
<p>혼합수업 활성화에 따른 출결변동 사항</p>	<p>1) <u>쌍방향 수업</u>: 당일 출석 원칙 (접속불량인 경우 대체학습제공 후 3일 내)            2) <u>콘텐츠 중심 수업</u>: 3일(수업일 기준) 내 들으면 출석            3) <u>과제제시 수업</u>: 3일(수업일 기준) 내 들으면 출석            4) <u>쌍방향+콘텐츠 수업</u>: 콘텐츠만 3일(수업일 기준) 내 들으면 출석            5) <u>쌍방향+과제제시 수업</u>: 과제제출만 3일(수업일 기준) 내 수행하면 출석            6) <u>콘텐츠+과제제시 수업</u>: 둘 다 3일(수업일 기준) 내 수행하면 출석</p> <p>※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장애학생, 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 (예시: 서면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를 근거로 출석처리 가능</p> <p>※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p>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부모 학습 확인서 (붙임1) 등의 출결 증빙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하며, 3일 이내 강의를 들을 수 없었던 사유가 분명해야 함.

### III 학부모 연수 자료

#### 1. 학생 상담주간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자녀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을 활용한 상담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왕성한 에너지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풍노도와 같고, 때로는 다 자란 어른처럼 말하지만 내면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고민들과 갈등으로 홀로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길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를 갖기 위해 『2021년 제1학기 학부모상담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지만 시간을 할애하시어 참되고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운영 기간

- 일시: 2021. 03.22.(월) ~ 03.26.(금) 1주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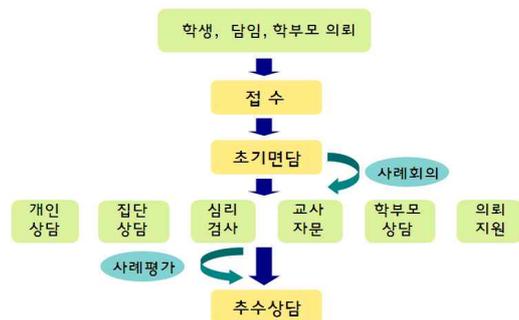
##### 2) 상담 내용

- 1, 2학년: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및 학업성적, 진로 관련 등
- 3학년: 학교생활 및 진로, 진학 상담 등
- 상담실(Wee 클래스): 진로, 심리, 정서적 영역의 상담 등

##### 3) 유선상담 방법 : 코로나19로 비대면 상담 권장(유선상담 활용)

-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 사전 약속 후 상담
- 상담실: 사전 약속 후 상담

- |                           |        |
|---------------------------|--------|
| ● 개인상담 (사전 예약제)           |        |
| ● 집단상담                    | ● 예방교육 |
| ● 진로교육                    |        |
| ● 인성프로그램                  |        |
| ● 심리검사 (무료- 적성, 학업, 성격 등) |        |



## 2.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권장)**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2/3이상 편성**

- 학생 봉사활동 통합(전 학년) 권장 시수

학교급		학생 봉사활동 통합 권장 시수	비고
초	5학년	통합 8시간 이상 권장	
	6학년		
중		3년간 30시간 이상 권장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
고		3년간 27시간 이상 권장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대면 개인봉사활동 지양**

- (예시) 현 중학교 2학년 봉사활동 통합(전 학년) 권장 시수

학년도	2019(중1)	2020(중2)	2021(중3)	계	비고
권장시수	18	12	0	30	

### 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기본방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 인정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나.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봉사활동 1시간)** 정규교육과정 내 초40분, 중45분, 고50분 기준  
그 외 교내, 교외 봉사활동 60분 1시간 산정
-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도 동일**

**[나이스 기재요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3조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 ※ 다만, **현월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 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b>활동 인정 대상 시간</b>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 인정 가능 기관

공공 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 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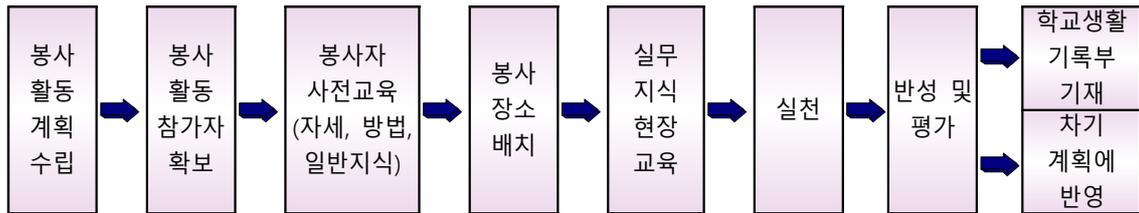
[영리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세부기준 참조]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하며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개인 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 봉사활동 기관 문의 : 063-582-5291(도교육청 봉사활동 담당자)

#### 라.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1)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 봉사활동 절차



## 2) 학교교육과정 외(수업시간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구성하여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봉사활동 종류의 예: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두가지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1년 동안 같은 도우미를 계속 하는 경우 등 지양)
- 봉사활동 절차



### ○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중요**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은 봉사활동 실적 인정 **않음**

- 지도교사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상황을 봉사활동 기록표에 기록

**※ 학교별로 양식 구안 사용,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생략**

#### ◎ 나이스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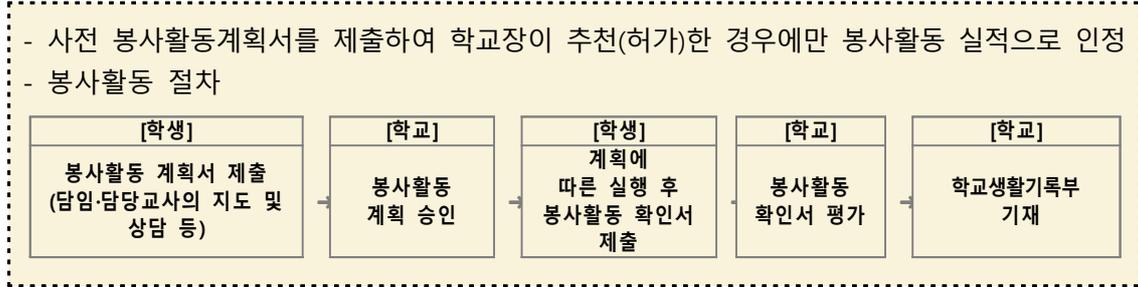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활동내용'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 입력함
-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마.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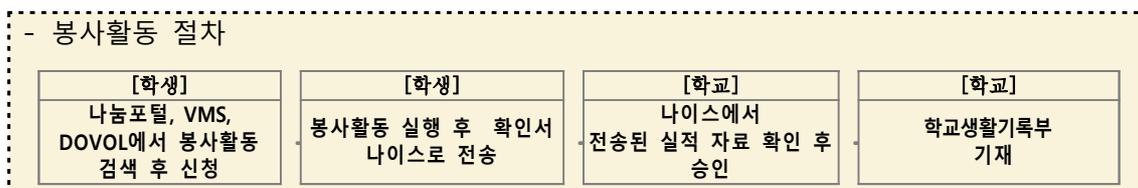
###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 발급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여서는 안 됨.
-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학교에 항시 비치, 학교 홈페이지 게시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 (**확인서 제출 안함**)

**연계사이트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중요

1.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2.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3.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4.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

**[나이스 기재요령]**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한다.
- 1) 우리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3) 운영방법**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미인정** 중요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년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시에 봉사활동 인정기관 여부, 봉사활동 계획(내용), 지도교사 유무, 안전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계획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
- 봉사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터전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단계적 심화 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
- 학생이 직접 청소년자원봉사 두볼(Dovol) 참여실적을 **1365나눔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이스로 전송하도록** 지속적 안내
- 담임교사는 학생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직접 제출, 나이스 기록 요청 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3. 성폭력, 성평등, 흡연, 미세먼지, 감염병 예방 교육**

**가. 성폭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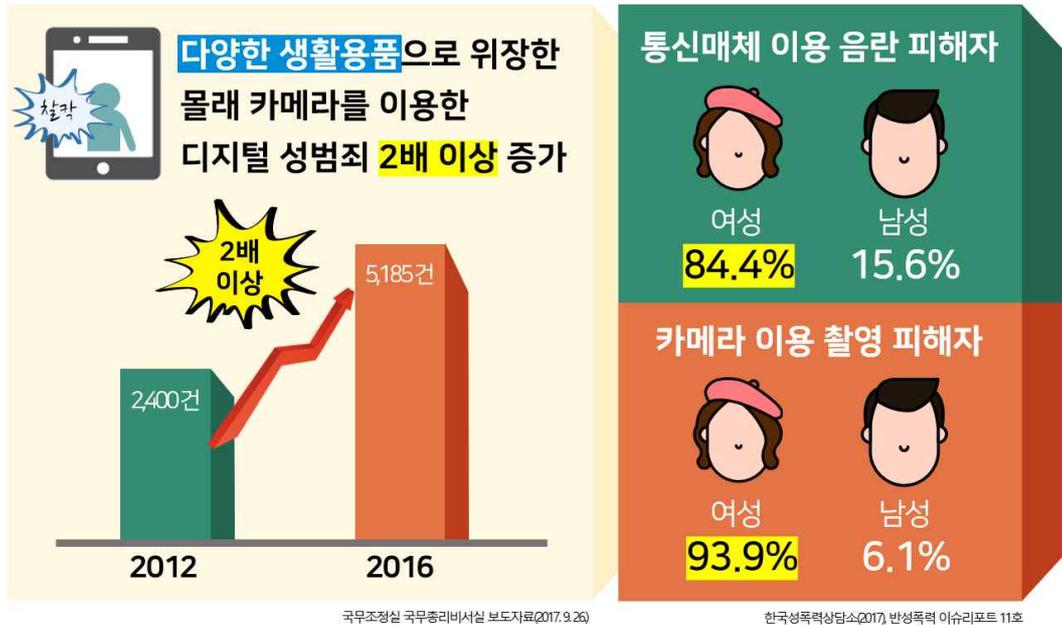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 배포, 유통되는 형식의 범죄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혹은 몰래카메라 제작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음

<p><b>불법 촬영</b>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p>	<p><b>비동의 유포, 재유포</b>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p>	<p><b>유통, 공유</b>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p>
<p><b>유포 협박</b>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p>	<p><b>사진 합성</b>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p>	<p><b>성적 괴롭힘</b>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p>

## 2) 디지털 성범죄 현황



## 3) 디지털 성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적 피해	개인적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불특정 다수 대상</li> <li>② 디지털 테러의 속성</li> <li>③ 범죄의 악순환</li> <li>④ 불법 촬영의 교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제적 피해</li> <li>② 정신적 피해</li> <li>③ 피해자에 대한 편견</li> </ul>

### 4) 전문가가 전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신고 : 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증거수집 :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된다.

-지원기관에 도움요청 : 삭제지원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만,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작업을 도와준다. 또 전문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 5) 디지털 성범죄 Zero를 위한 정부 대책

...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b>삭제서비스 지원</b>	유포피해 검색, 수집 및 삭제요청 지원
 <b>수사지원</b>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증거 채집) 지원
 <b>법률지원</b>	불법촬영, 불법영상물 유포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민사, 형사 등 소송대리 지원
 <b>의료비 지원</b>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
 <b>상담지원</b>	피해상황 파악,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안내, 지지상담 등

## 6) 디지털 성범죄 전문기관 안내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평일 10:00~17:00)
  - 온라인게시판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전화상담(☎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www.women1366.kr](http://www.women1366.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검색)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전화상담(☎1388, 24시간)
  - 문자·카카오톡 상담(#1388)
- ▶ 전라북도 전문상담 기관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완산구)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완산구)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 나. 성평등, 모두에게 즐거운 상상

### 1) 성 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여성의 일 따로, 남성의 일 따로?	성별 고정관념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p>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0분, 여자는 4시간 18분이었습니다.</p>	 <p>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이중적 기준은 사람들 각각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에서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맡게 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p>	 <p>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p> <p>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하더라도 여성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힘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p>

### 2)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성차별적 상황들

성차별적 문화	성차별적 법과 제도
<p>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는 의심과 불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폭력을 동조·지지하는 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제의식 없이 더욱 확대됩니다.</p>	<p>더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법과 정책, 수사기관이 때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많은 가해자들이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p>

### 3)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

정부는 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허용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개개인이 인식 전환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 다. 청소년기 흡연 예방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중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협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기 흡연의 영향

<p>15세 흡연 시작</p> <p>25세 흡연 시작</p> <p>3배</p> <p>60세 폐암 발병률</p>	<p>▶ 흡연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음</li> </ul> <p>▶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흡연자,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p>	
<p>▶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다는 편</p>	<p>▶ 흡연이 체중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이 있으나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음</p>	<p>▶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음</p>
<p>▶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 저하, 전식, 조기 복부 대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질환 유발</p>	<p>▶ 비흡연 도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남</p>	
<p>▶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남</p>	<p>▶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이 많이 발견되며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킴</p>	



## 2)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이득



### 3) 금연 직후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

- 1) 입냄새가 나지 않고, 치아가 하얗고 건강해집니다.
- 2) 옷과 머리에 나쁜 냄새가 사라집니다.
- 3) 손가락의 착색이 사라집니다.
- 4) 음식 맛이 좋아지며, 후각이 돌아옵니다.
- 5)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차게 됩니다.



## 라. 감염병 예방

### 1)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등교중지

#### □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중인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③ 학생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 □ 학생 출결증빙 서류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p>&lt;유의사항&gt;</p> <p>-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p>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li> </ul>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p>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p>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li> </ul>	<p>[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발급가능 시) 등)</li> </ul> <p>[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li> <li>•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 방문시 진료확인서 등</li> <li>※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li> <li>※ <b>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b>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li> <li>☞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li> </ul>

\* 출처: 2021학년도 중등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 2)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종류와 등교중지

병명	초기 증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피부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인플루엔자 (독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구제를 통보받은 무증상자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증상자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3일간 - 증상 호전 시 담임 연락 후 등교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기간연장 가능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모든 감염병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1

### 3)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상태일 때 관리

환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되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li> <li>· 환자가 거주하는 방은 자주 환기를 시킴</li> <li>·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공간 사용</li> <li>· 화장실을 공동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유지</li> </ul> </li> <li>·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일반 세제와 락스 희석 사용)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설거지</li> </ul> </li> <li>· 손씻기, 기침예절 등 건강수칙 지킴</li> </ul>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은 되도록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 외출할 상황에는 부모가 동반하거나 허락한 경우에만 함</li> </ul> </li> <li>·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 자제</li> <li>·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외부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함</li> <li>· 평소 등교 시와 동일한 생활습관 유지(기상과 취침시간 준수)</li> </ul>

### 마. 미세먼지 대응

건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고 사망 증가와 연관이 있음</li> <li>·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li> <li>·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노화 촉진</li> <li>·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b>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b></p>  <p>기침 많이 함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피부 가려움      안구건조 눈 가려움</p> </div>																			
미세먼지 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예보등급</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예보 등급</th> </tr> <tr> <th>좋음</th> <th>보통</th> <th>나쁨</th> <th>매우 나쁨</th> </tr> </thead> <tbody> <tr> <td>미세먼지 (PM<sub>10</sub>)</td> <td>0-30</td> <td>31-80</td> <td>81-150</td> <td>≥ 151</td> </tr> <tr> <td>초미세먼지(PM<sub>2.5</sub>)</td> <td>0-15</td> <td>16-35</td> <td>36-75</td> <td>≥ 76</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단위: <math>\mu\text{g}/\text{m}^3</ma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a href="http://jihe.jeonbuk.go.kr">http://jihe.jeonbuk.g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서비스 신청</li> </ul> </li> <li>-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li> </ul> </li> </ul>	구분	예보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 (PM <sub>10</sub> )	0-30	31-80	81-150	≥ 151	초미세먼지(PM <sub>2.5</sub> )	0-15	16-35	36-75	≥ 76
구분	예보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 (PM <sub>10</sub> )	0-30	31-80	81-150	≥ 151																
초미세먼지(PM <sub>2.5</sub> )	0-15	16-35	36-75	≥ 76																

<p>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요령</p>	<p>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②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③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⑥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⑦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p>
<p>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p>	<p>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개정됨          나.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b>1) 관련서류 제출</b> : 기저질환 보유자(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 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b>2) 고농도 미세먼지 시</b>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통해 확인  <b>3) 사전연락</b> :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등교시간 8시 20분 전까지)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에 해당</p>

#### 4.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예방 교육

최근 온라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증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교육을 위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인터넷 수칙과 음란물 대처 요령, 각종 유해 사이트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한 예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

- 1) 컴퓨터 사용 능력 키우기
- 2) 컴퓨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알기
- 3)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알가계산하기, 문서 작성하기, 통신하기,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등

##### 나. 자녀의 올바른 컴퓨터 사용 지도 요령

- 1) 다양한 컴퓨터 기능과 활동을 소개하고, 함께 해보기
- 2) 컴퓨터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해주기
- 3) 컴퓨터와 관련된 자료, 장소, 행사에 자주 접하도록 해주기
- 4) 컴퓨터 활동 이외의 활동을 자주 하도록 도와주기
- 5) 컴퓨터로 창작 활동 도와주기

##### 다. 우리 자녀는 과연 안전한가?

부모들은 때때로 내 아이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모 몰래 디스켓이나 CD-ROM을 감추어 보관한다.
- 2)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한밤중에 안 자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 3) 자녀들이 보관하고 있는 디스켓에 수록된 파일들 가운데 확장자가 'gif'나 'jpg' 등으로 끝나는 그래픽 파일들이 많다. 자녀들이 보관하고 파일들이 모두 음란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으나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4) 부모의 신용카드 청구서에 부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과 금액이 청구될 경우가 있다. 특히 항목이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라면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구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WEB SITE' 등으로만 적혀 있을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음란물업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업체 명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 5) 부모가 방으로 들어오면 자녀들이 순간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화면을 바꾸어 버린다.

#### **라.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인터넷 수칙 10가지**

- 1) 인터넷상에서 절대로 설문지를 작성하면 안 된다. 특히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사는 지방, 일정,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한다.
- 2)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3)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당신이 대화방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 가운데는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개 무언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 4)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5) 낯선 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 안 된다.
- 6)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7)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상당히 친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8)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특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9) 폭력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라.
- 10) 고의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라.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라. 음란물 대처 요령**

- 1) 컴퓨터를 거실로.
- 2) 자녀의 컴퓨터에 음란물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 하기([www.greeninet.or.kr](http://www.greeninet.or.kr) 교육부 무료 제공)
- 3) 자녀와 함께 컴퓨터를.
- 4) 밤늦은 시간에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키기.
- 5) 신용카드를 잘 관리하기.

**Youtube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의 안전도를 높여주세요!**

- ① 유튜브를 실행하여 오른쪽 상단의 ≡, 자기이름을 클릭한다.
- ② 스마트폰 상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서브메뉴]-[설정]을 누른다.
- ③ 설정 란에서 [일반]을 누른다.
- ④ [제한모드]오른쪽으로 드래그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ouTube mobile app interface. On the right, the '제한 모드' (Restricted Mode) toggle is turned on, indicated by a red arrow. A text box next to it explains that this mode filters out potentially harmful content. On the left, red arrows point to the menu icon (≡), the '설정' (Settings) option, and the '일반' (General) option.

**5. 3학년 진학 관련 안내**

**가. 3학년 평가 계획 및 주요 행사**

시기	평가 및 행사(일자)	시기	평가 및 행사(일자)
4월	개교기념일(3) 생애주기안전체험(8) 영어듣기평가(9) 1학기 1차고사(26~28)	9월	영어듣기평가(9) 전기고 내신산출기준일(산업수요 맞춤형고, 30)
5월	현장체험학습(21)	10월	2학기 1차고사(6~8) 테마식현장체험학습(11~13) 전기고 내신산출기준일(특성화고 등, 29)
6월	1학기 2차고사(28~30)	11월	2학기 2차고사(30)
7월	1학기 2차고사(1) 여름방학(16)	12월	2학기 2차고사(1~3) 후기고 내신산출기준일(13) 호성예술제(27), 겨울방학식(30)
8월	개학(23)	2월	개학(14), 졸업식(8)

## 나. 2022학년도 전북고입 신입학 전형일정(안)

구분	전기고				후기고		
	특수목적고(4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총 4교]	특수목적고(3교) 특성화고(전문24교, 대안4교) 일반고(전문4교, 예체4교) [총 39교]		특수목적고(1교) 자유형 사립고(1교) [총 2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교)	평준화 일반고 (38교)	
내신산출기준일	'21.9.30.(목)	'21.10.29.(금)		'21.12.13.(월)			
내신산출완료일	'21.10.11.(월)	'21.11.5.(금)		'21.12.15.(수)			
원서교부·접수	'21.10.18.(월)-10.22.(금) 17:00까지	특 전 계 (전 평 준 화 고 입)	'21.11.12.(금)- 11.15.(월) 17:00까지	일 반 고 전 형	'21.11.18.(목)- 11.22.(월) 17:00까지	상산고: 2021.12.6.(월)~12.9.(목) 외고: 2021.12.15.(수)~12.17.(금) 일반고: 2021.12.20.(월)~12.22.(수)	
전형기간 (전형일)	'21.10.27.(수)-10.29.(금)		'21.11.16.(화)		'21.11.23.(화)- 11.25.(목)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12.6.(월)~13.(월)	
합격자 발표	'21.11.2.(화) 10:00		'21.11.17.(수) 10:00		'21.11.26.(금) 10:00	'22.1.3.(월) 10:00	'22.1.7.(금) 10:00
학교배정발표						'22.1.14.(금) 14:00	
등록기간	2022.1.17.(월)-1.20.(목)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2.2.3.(목) - 2.4.(금) 17:00					
	전형일	2022.2.7.(월) - 2.8.(화)					
	합격자발표	2022.2.9.(수) 10:00					
	등록기간	2022.2.14.(월) - 2022.2.15.(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2.2.21.(월) - 2022.5.27.(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8월부터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b>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b>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b>특수목적고(3)</b> 전북과학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b>특성화고(28)</b> -전문계열(24교)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공고, 전주상업정보고, 완산여고, 군산상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진경여고, 정음제일고, 칠모고, 학산고, 남원융성고,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계임과학교, 한국한방고, 진안공고, 전북유니텍고, 오수고, 한국치즈과학교, 강호향공고, 부안제일고, 줄포자동차공고 -대안계열(4) 고산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선고  <b>일반고 전문계(4)</b>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향열여고, 영선고  <b>일반고 예체계(4)</b>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 밑줄 : 2개 전형 실시 고교	<b>특수목적고(1)</b> 전북외고  <b>자유형 사립고(1)</b> , 상산고  ※ 상산고(전국단위) 별도 전형일정(예정) 2021.12.6.(월) ~ 2022.1.3.(월)까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예정임	<b>평준화고(38)</b> 전주(23교):전북사대부고 양현고, 전라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고, 전주제일고, 동안고, 완산고, 우석고, 유일여고, 전북여고, 전일고, 전주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사대부고, 전주성심여고, 전주영생고, 전주신흥고, 전주중앙여고, 전주한일고, 전주해성고, 호남제일고, 군산(7교):군산고, 군산여고, 군산동고, 군산제일고, 군산영광여고, 군산중앙고, 군산중앙여고 익산(8교):이리고, 이리여고, 남성고, 원광고, 원광여고, 이리남성여고, 이일여고, 전북제일고 <b>비평준화고(54)</b> 군산(1교):한들고 익산(5교):상원고, 익산고, 보령고, 한일고, 정음(10교):배령고, 서영여고, 산태고, 양산여고, 인상고, 정음고, 정음여고, 정음제일고, 고장주고, 칠보고, 태인고, 학산고, 호남고, 남원(5교):남원고, 남원여고, 남원서진여고, 성원고, 인월고 김제(7교):김제고, 김제서고, 김제여고, 금산고, 덕암고, 만경고, 만경여고 완주(2교):완주고, 한빛고 진안(3교):마령고, 안천고, 진안제일고 무주(4교):무주고, 설천고, 무풍고, 안성고 장수(3교):백화여고, 산서고, 장수고 임실(1교):임실고 순창(3교):순창제일고, 동계고, 순창고 고창(5교):고창고, 고창북고, 고창여고, 영선고, 해리고 부안(5교):백산고, 서림고, 부안고, 부안여고, 위도고			
전형138(133교)	4교	39교(중복 2교 포함)		2교	92교(중복 2교 포함)		

- ※ 상기 고입전형 일정은 3월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의결에 의해 현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특성화고(대안계열 제외)와 일반고의 전문계열 지원가능
- ※ 전기고에 불합격한 경우 후기고에 지원 가능
- ※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합격시킨 후, 합격자에 한하여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배정. 추첨 배정방식은 합격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1순위 미달시 2순위-3순위-등 순)에 따라 추첨하여 배정.

## 다. 원서 접수 및 내신 산출 기준일

구분	전형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내신산출 기준일	내신반영
전기고	마이스터고	2021.10.18.(월)-10.22.(금)	21.9.30.(목)	3학년 1학기까지
	특성화고	특별전형	'21.10.29.(금)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까지
		일반전형		
	전북과학고	8월부터 전형 실시		
후기고	상산고	2021.12.6.(월)~12.9.(목)	'21.12.13.(월)	3학년 2학기 지필고사(1, 2차, 수행평가)
	외고	2021.12.15.(수)~12.17.(금)		
	일반고	2021.12.20.(월)-12.22.(수)		

## 라. 내신성적 반영 항목(2021학년도 고입 전형 기준)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봉사활동상황		15점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15점	5%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1) 교과성적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예술 교과	전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함.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 C                      - 양 : D
- 가 : E

2) 비교과 성적

가) 출결상황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학년별 4~10점으로 산출하며, 1, 2, 3학년 출석점수를 합산하여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미인정결석 일수	출 석 점 수	미인정결석 일수	출 석 점 수	비고
0일	10 점	12 ~ 15 일	6 점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면 결석1일
1 ~ 3 일	9 점	16 ~ 19 일	5 점	
4 ~ 7 일	8 점	20 일 이상	4 점	
8 ~ 11 일	7 점			

**나) 봉사활동 상황(2022년 고입 전형부터 바뀐 부분)**

①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가산점 부여 항목 - 전년도 예시**

□ 가산점 부여 항목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b>(중복 허용)</b>	표창별 0.5점
2	자율활동	유공자	학급 실장·부실장, 학생회 회장·부회장과 자치위원 등의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b>(중복 불허)</b>	유공 항목별 0.5점 및 우수자 표창항목별 0.5점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b>(중복불허)</b>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창체동아리 및 자율동아리)에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되어 부서별 1명 이하로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b>(중복 불허)</b>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b>(중복 불허)</b>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b>(중복 불허)</b>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b>당해 학년도</b>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한 학기 이상)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위 표는 가산점 부여항목의 예시이며, 이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항목의 예, 기준, 세부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라) 내신 성적 관리 방법

-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력신장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바른 수업태도와 과목별 수행평가 때 과제나 제출물을 꼼꼼히 챙긴다.
- 효행, 선행, 봉사생활을 하여 표창과 함께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신의 태만 등으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 지각, 조퇴 등을 하지 않는다.
- 전 교과에 대하여 수행평가를 잘 받도록 평소에 열심히 노력한다.
- 전 교과에 대하여 정기고사 시험을 잘 보도록 평소에 연습·복습을 철저히 한다.

진학 학교 선택 시 꼭 유의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과 보호자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한다.</li> <li>* 가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학교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다.</li> <li>* 특목고(외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등)를 가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별 전형요소를 확인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독서활동 준비 철저)</li> </ul>

## 마. 2020학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 (졸업생수 : 110명)

특수목적/특성화/ 일반고(전문,예체계)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1명
	특성화고 8명
	일반고 전문계열 1명
	대안계열 1명
평준화고 일반고	91명
비평준화 일반고	7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1명
<b>합 계</b>	<b>110명</b>

## 바. 부탁드립니다.

- 1) 수업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합니다.
- 2) 일과 중 외출(필요시 외출증)이나 조퇴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 3) 휴대폰을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4) 학교에서 발행한 안내문이나 교육자료를 꼭 봐 주시고 신청서 등은 잘 챙겨 보내주세요.
- 5) 학생 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세요.
- 6)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하고 후에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3학년교무실 253-6960, 본교무실 253-6946, 인성인권부실 253-6951

## 6. 학부모 부패방지 청렴 교육

### 가. 불법찬조금

#### 1) 불법찬조금의 정의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2)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운동회, 현장학습)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3)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의 구분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구성 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미편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 목적	- 법령에 약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 교직원(배우자), 계약직(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급식보조원), <b>공무수행사인</b> (학부모위원, 학폭위원) (적용범위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부정청탁	▶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한 14개 항목 학교는 “ <b>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에 해당됨</b> ”
부정청탁자	▶ 제재(과태료) 대상임
금품 수수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 수수 금지	▶ <b>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음료를 포함한 기타 물품 수수는 금지</b> ▶ 교직원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께서 제공할 경우 제공 금품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전학년도 담임교사에게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음(졸업시) ▶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임 ▶ 적용대상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 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의무

### 1)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출장·위원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이용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 2)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사실확인(권익위) ⇨ 신고서 이첩.고발(권익위)  
⇨ 조사실시(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 ⇨ 신고처리 결과 통보(권익위)

###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

구 분	내 용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 불이익.차별 종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됨 · 신분보장조치: 원상회복, 효력유지, 전직, 징계보류 등의 조치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종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신변 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등 · 보호기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비밀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함 ·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됨
의료지원	·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
법률구조	·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감면
책임감면	· 부패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7. 교육활동 보호 교육

### 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 1) 주요 법령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2016년 2월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2016년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2) 주요 제도

######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을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권고 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사건 처리 업무 주관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건의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 담당
- 학교 및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 지원 가능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구축, 전문인력 및 상담실 확보 등) 명시

### 나

####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다

###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

##### \* 공무집행 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라

###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 1) 사안 처리 방향

#####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적 지원 강화

- 학교구성원 간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상담 및 법률 자문 운영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매뉴얼 교육

■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피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즉각적인 사안처리로 2차 피해를 막고 사실 왜곡,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2) 무관용 원칙 적용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
-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예: 공무집행방해죄)
- 상급기관 의무 보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3)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처벌·징계 유형

-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의무화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 가능 단,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불가능
-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 징계는 임의 처분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진술권 부여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참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비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li> <li>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li> <li>3. 학교에서의 봉사</li> <li>4. 사회봉사</li> <li>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6. 출석정지</li> <li>7. 학급교체</li> <li>8. 전학</li> <li>9. 퇴학처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li>3. 특별교육이수</li> <li>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5. 퇴학처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li> <li>② 관찰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li> </ol>

## 8.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

###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협박, 공갈, 강제적 심부름과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폭법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 학생이 설령 학생이 아니라 해도 피해학생이 학생인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 나.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의 행동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한다.
-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한다.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 노선을 택한다.
-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하며 털썩 주저앉는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론 훔치기도 한다.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있다.
-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노트나 가방, 책 등에 심리적 불안을 암시하는 낙서가 많이 쓰여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하다.
-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자녀의 행동이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4개의 경우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학교폭력의 피해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5~11개의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 폭력일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12~18개의 경우	학교 측에 알리거나 전문기관과 상담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개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 다.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후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은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 징후라고 합니다.

-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을 발휘하길 즐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 경찰관서 등에 가해자로 불려간 경험이 있다.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 알코올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
- 방화나 동물 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한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한다.
-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다.
-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 씹씹이가 커진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제적 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 행복지수 up ↑』를 중심으로 재구성.

자녀의 행동이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경우	자녀와 대화로 확인하여 다른 학생을 가해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6~9개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0~16개의 경우	학교 측과 해결방안을 논의 또는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해결하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언행은 자녀에게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사랑과 관심, 대화로 자녀를 지도할 때 학교폭력은 저절로 예방 및 근절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 4)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 시킵니다.

- 5)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6) **폭력 피해 우려**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7)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전문상담 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생부교사 등)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8)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9)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를 쓰는 자녀, 잘난 체 하는 행동의 자녀, 유별난 복장을 하는 자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한다.
- 10) 자녀에게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11) 자녀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나 불필요한 시내 배회를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12) 자녀가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였을 때는 **사유를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 13) 자녀와 대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수시 관심 및 조언**을 합니다.
- 14) 자녀에게 사회나 학교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합니다.
- 15)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자녀에게 지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통함을 알려줍니다.
- 16)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도록** 지도합니다.
- 17)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 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조치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성적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징계) 결정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 측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로는 서면사과와 각서, 치료비합의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금지 조치, 교내외 봉사활동 명령과 가정학습(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대안학교나 위 센터 입교 등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학급교체, 강제 전출 조치 등을 받게 되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가해자부모포함) 특별교육은 학교상담교사, Wee클래스, Wee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한 곳에서만 실시됨**)

## 사. 학교폭력상담 전화번호 안내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75-0188~9
- 전주호성중학교 교무실 (063-253-6946) 인성인권부실(063-253-6951)

## 아. 학교폭력에 따른 학부모의 대처방안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지지해 주세요.</li> <li>-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li> <li>-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li> <li>-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li> <li>-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li> <li>-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li> <li>-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li> <li>- 도피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대처하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li> </ul>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li> <li>-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li> <li>-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li> <li>-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li> <li>-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li> <li>-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li> <li>-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li> <li>-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li> <li>-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li> </ul>

## 자. 학생 인권 교육

모든 아이들은 어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선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회는 한발 한발 민주화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지만 학교와 부모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히 선언하고 변해야 합니다.

학생도 인간이고 존엄성이 있으며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우의 방법 또한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 ※ 학교와 인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 간략히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인권협약

### 1)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교사와 부모, 어른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야 한다.

### 2)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우리는 교실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표현의 기회가 충분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표현 방법들을 쉽게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 3)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아동이 자신과 취미와 관심과 생각이 맞는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사귄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는 적극 권장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모임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올바른 활동을 활동의 길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

### 4)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교사나 부모라 하더라도 간섭하고 침해해서는 안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집단 및 사회생활에서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5)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 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체벌 및 신체적인 벌 등 비인권적인 벌들은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6) 제31조

우리에게 쉼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부나 생계를 위해서 아동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가정에서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 자녀존중 십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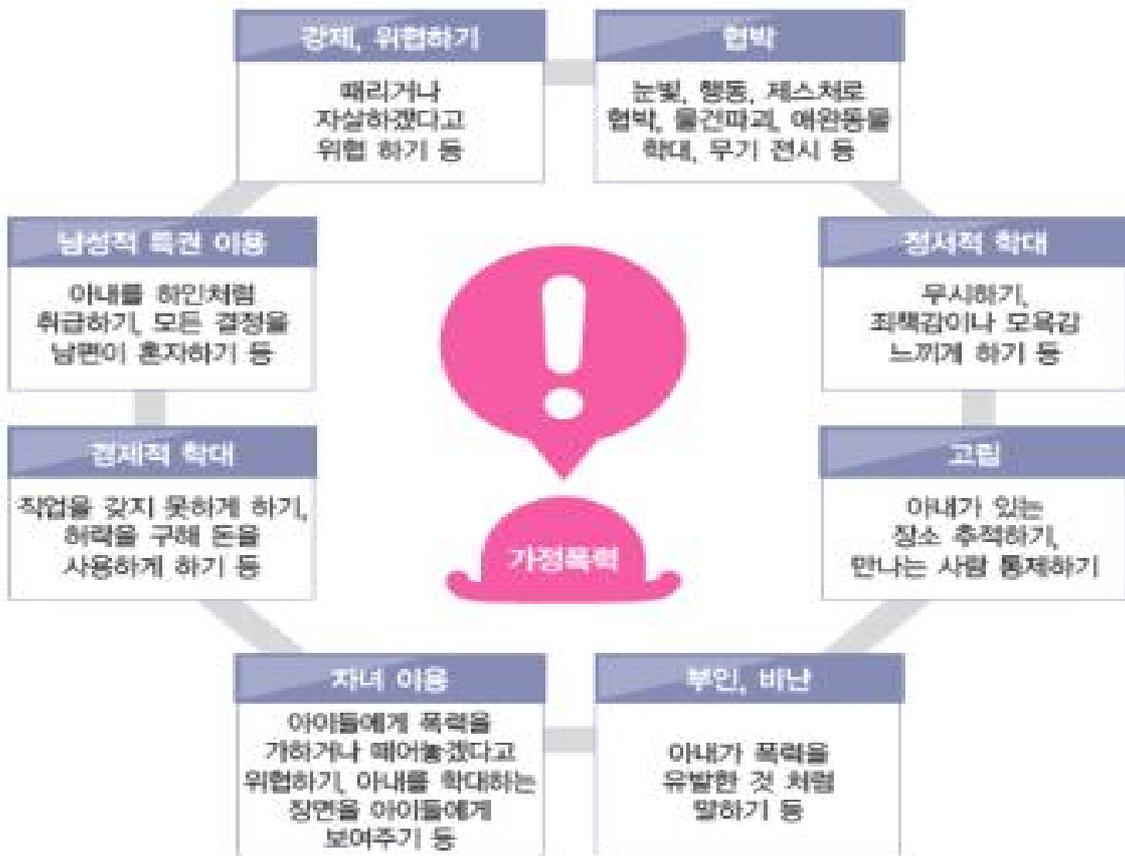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 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인권존중 생활협약 제정 운동 전개

교사 3행	학생 3행	학부모 3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된 수업을 하겠습니다.</li> <li>•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li> <li>•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겠습니다.</li> <li>•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li> <li>• 학생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li> <li>•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li> <li>•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li> <li>• 친구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li> <li>• 친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li> <li>• 선생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li> <li>• 학교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것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와 하루 10분 이상 마주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li> <li>• 아이의 성적보다 마음을 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li> <li>• 남보다 잘 하라는 말보다 함께 어울려 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li> <li>• 따뜻한 말로 인사하기, 안아주기 등 자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li> <li>•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겠습니다.</li> <li>•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하겠습니다.</li> </ul>

10.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

가. 가정폭력유형



## 나. 아동학대

###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 아동학대란?(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 아동학대의 유형별 내용

####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3.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4. 방임, 유기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유기에 의한 후유증

-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 부모
-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아동학대 대처법**

-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 112에 신고하기
- 상담전문기관에 전화하기 (신고자 비밀 보장됨)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학부모 예방교육

##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2. 용어 정의

▷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이며 이는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선행학습의 범위

▷ QnA.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4.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에서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합니다. 조사대상자료는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입니다.

## 5. 학교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제5조의 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12.20]

## 6.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예방 교육 방법

▷ QnA.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 회의, 간담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기타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등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정보 공유, 학부모 의견 수렴(청취), 학습상담 기회 제공, 진로·진학 관련 설명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7. 학부모의 책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IV 부 록

### 1. 업무별 보직교사 명단

순	담당부서	성명	담당과목
1	교무기획부장	안*위	수학
2	교육연구부장	오*자	국어
3	인성인권부장	최*창	영어
4	정보과학부장	임*지	음악
5	자유학기부장	김*정	기술·가정
6	체육안전부장	서*열	체육
7	1학년부장	석*숙	국어
8	2학년부장	최*희	국어
9	3학년부장	김*중	사회

### 2. 학급 담임교사 명단

학년 반	1학년			2학년			3학년		
	정담임	부담임	비고	정담임	부담임	비고	정담임	부담임	비고
1	김*정 (사회)	오*자 (국어)		서*열 (체육)	안*위 (수학)		김*현 (과학)	서*택 (상담)	
2	김*란 (과학)	박*란 (수학)		김*희 (과학)	이*혜 (일어)		강*희 (기가)	유*현 (체육)	
3	이*지 (미술)	김*정 (기가)		이*은 (사회)	임*현 (영어)		김*리 (수학)	최*창 (영어)	
4	이*화 (체육)	채*관 (기가)		구*길 (도덕)	이*숙 (영어)		강*숙 (국어)	임*아 (영양)	
5	석*숙 (국어)	김*숙 (영어)		최*희 (국어)	권*은 (보건)		김*중 (사회)	임*지 (음악)	
부장	석*숙(국어)			최*희(국어)			김*중(사회)		

### 3. 학급담임 연락처

학년 반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연락처	담임	연락처	담임	연락처
1	김*정	253-6947	서*열	253-6950	김*현	253-6960
2	김*란	253-6947	김*희	253-6950	강*희	253-6960
3	이*지	253-6947	이*은	253-6950	김*리	253-6960
4	이*화	253-6947	구*길	253-6950	강*숙	253-6960
5	석*숙	253-6947	최*희	253-6950	김*중	253-6960

### 4. 행정실 연락처

주무관	이*영	253-6945	국*원	253-6945	이*하	253-6945
-----	-----	----------	-----	----------	-----	----------